

의안번호	2209335
의 퇴 인	조인철 의원
회 답 일	2025. 4. 1.
추 계 번호	25F19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도심융합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1조의2(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)	○ 도심융합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- (감면율) 사업개시일 이후: 5년 100% + 2년 50% 또는 3년 100% + 2년 50%	
2	안 제121조의17(기업 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○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 신설 - (감면대상) 도심융합특구 조성 완료 5년 이내에 해당 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·이전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- (감면율) 특구 내 사업에서 발생소득에 대해 3년간 100%, 2년간 50% 세액감면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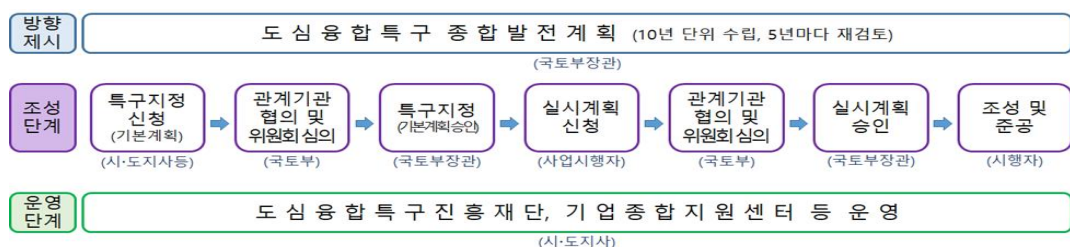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1조의2(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1조의17(기업 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,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-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1)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을 의미
 -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대전광역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 등 5개 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특구 내 창업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망하여야 하지만, 현재로서는 도심융합특구 내 외국인투자 규모 및 발생 소득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는 다음과 같음
 - 기본계획 수립(시·도지사등) → 기본계획 승인, 지구 지정(국토교통부장관) → 실시계획 수립(시행자) → 실시계획 승인(국토교통부장관)

[그림 1]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운영 절차

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1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은 도심융합특구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,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

- 그러나 2024년 11월 정부가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후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실시계획 용역을 수립에 착수하는 단계로서 향후 실제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
 - 각 지자체별로 본격적인 후속 행정절차 이행의 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 존재
-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 및 외국인투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함

Ⅲ. 부대의견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 제4항·제5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감면신청 기한에 대한 문구도 함께 정비할 필요성 존재
 - 이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세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